

2018. 10. 12.(금) 10:00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2018년도
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목 차

1. 감사목적
2. 감사근거
3. 감사기간
4. 감사대상기관
5. 감사반 편성
6. 감사일정 및 장소
7. 감사요령 및 중점 감사사항
8.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9. 기타 필요한 사항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1. 감사목적

-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평가·분석하여,
- 우수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추진하고,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·개선토록 하는 한편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
2. 감사의 근거
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
- 『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』 제2조

3. 감사기간 : 2018.11.9.(금)~11.22.(목) 【14일간】

4. 감사대상기관

구 분	대 상 기 관
당연 기관	충청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(사업소 포함)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※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, 경제자유구역청
본 회의 승인기관	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산업경제위 소관 ※ 충청북도기업진흥원, 충북신용보증재단,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, 충북테크노파크 ※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함.

※ 필요시 현지 확인

5. 감사반 편성

가. 감사반명 : 산업경제 행정사무 감사반

나. 편성방침 : 산업경제위원회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

다. 위원명단

연 번	직 위	성 명	비 고
1	감사반장	박 우 양	위원장
2	감사위원	임 영 은	부위원장
3		하 유 정	위원
4		박 문 희	"
5		이 상 정	"
6		이 상 식	"

라. 감사보조요원

-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 문 석
- 산업경제 전문위원 유 지 영
- 산업경제 지방행정주사 남 효 식
- 산업경제 지방행정주사보 신 연 우
- 산업경제 지방행정주사보 남 윤 정
- 속 기 사 2명

6. 감사일정 및 장소

감사 일자		대상 기관	감사 장소	비고
11. 9.(금)	14:00	충북경제자유구역청	산경위원회 회의실	
11. 10.(토) ~ 11. 11.(일)		휴무일 및 공휴일		
11. 12.(월)	10:00	경제통상국	산경위원회 회의실	
11. 13.(화)	10:00	농정국	”	
11. 14.(수)	10:00	충청북도기업진흥원	”	
	14:00	충청북도농업기술원 ※ 현지확인 감사	피감사기관 회의실	오창읍 소재
11. 15.(목)	10:00	충북테크노파크	산경위원회 회의실	
	14:00	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	”	
11. 16.(금)	10:00	충북신용보증재단	”	
	14:00	행정사무감사 보충	”	
11. 17.(토) ~ 11. 18.(일)		휴무일 및 공휴일		
11. 19.(월) ~ 11. 22.(수)	전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사결과 종합검토 ·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		

※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전문위원실 감사장 사전준비

- 선서문(피감사공무원, 증인(참고인) 및 의사봉, 좌석배치
- 마이크·음향기기 확인, 속기사 좌석 일정 공유 및 배치
- 현지 감사시 중형버스 배차,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출장조치 등

나. 피감사부서(기관) 협조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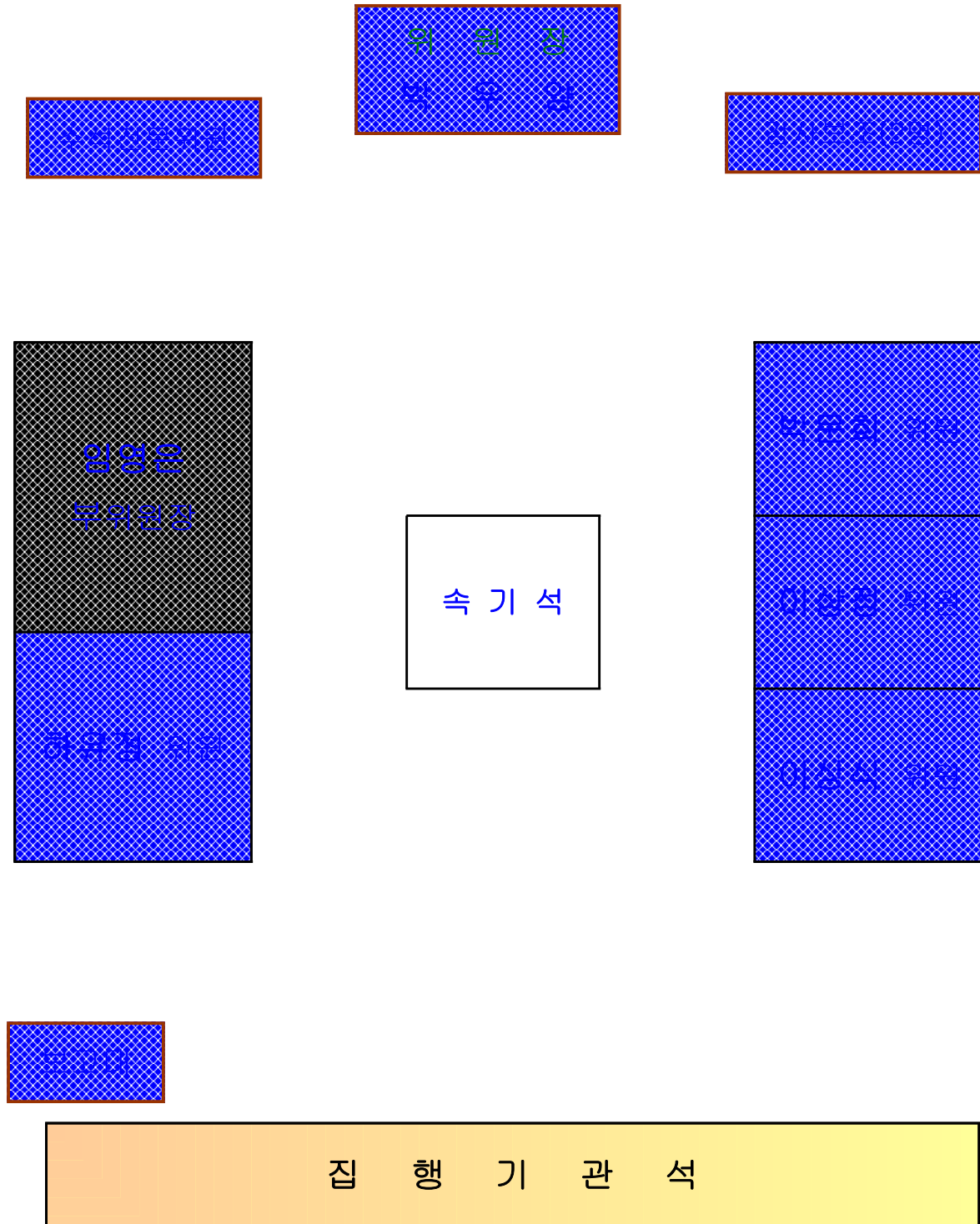
- 현지확인 감사 기관에서는 감사장, 속기사 자리 배정 등
감사 준비에 철저
 - ※ 명패, 음향장비(마이크 등), 노트북(필요시), 속기사 좌석 등
- 감사계획 및 감사반 안내, 감사자료 작성 및 기일내 제출
- 수감종료 후 2일 이내 수감내용 제출(별지 5)

다. 기타사항

- 감사 도중 감사일정 등에 있어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,
감사위원위원회 협의에 의해 결정

【별지 1】

산업경제 행정사무 감사반 좌석배치도



피감사 공무원 선서서

선 서

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18년 11월 일

기 관 명 :

선 서 인 : (인)

【별지 3】

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

선 서

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2018년 11 월 일

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

증 인 : (인)

【별지 4】

감사결과 의견서

○ 피감사기관명 : ○ 감사위원 : (서명 또는 날인)

구분	내용	비고
시정·개선 요구사항 (건)		
건의·촉구 요구사항 (건)		
제도개선 요구사항 (건)		
기타사항 (건)		

【별지 5】

행정사무 감사 수감 내용

○ 피감사기관명(일시) :

연번	위원명	발언내용	답변내용	향후계획